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 준 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2 선거구 박 운 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기후
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
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기금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위험이 큰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의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